

2026년 1월 16일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



•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, MSDS)란?

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, 유해성·위험성,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물질 안전보건 취급 설명서

|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

- '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·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·제출하고, 영업비밀의 경우 사전에 비공개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
- 제도 시행 당시에 이미 제조·수입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제조·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.
최종적으로 1톤 미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유예기간이 '26.1.16. 만료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이에 따라 '26.1.16.부터 사용·양도·제공하는 MSDS에는 제출 시 부여되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, 영업비밀로 인해 비공개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번호, 유효기간, 대체자료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단, 연구개발 화학제품은 제출 제외 대상으로 제출번호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고, 산안법 상 MSDS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전달을 위해 MSDS를 작성하여 양도·제공한 경우 제출번호나 비공개승인 번호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| 중간제품 제조·수입자 제도 이행 안내

*중간제품 제조·수입자: 원료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MSDS를 토대로 중간제품 MSDS 작성·제출

- 원료 제조·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·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'26.1.16.에 만료되므로, 중간제품의 MSDS도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

| MSDS 제출 방법

물질안전보건시스템(msds.kosha.or.kr) -> 'MSDS 제출' -> '최초 MSDS 제출' 탭을 통하여 신청 가능

| MSDS 비공개 승인 방법

물질안전보건시스템(msds.kosha.or.kr) -> '비공개신청' 탭을 통하여 신청 가능



MSDS 제도 안내